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가단30052 판결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8. 8. 28.

판결 선고2018. 9.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9. 10. 21.까지 연 5%, 2009. 10.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9.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가단340733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일부를 기각한다.

판사이미션